

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관련 주요 작성 항목

- 1.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** :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함께 조직도에 명시된 관련자의 직무를 기술한다.
- 2.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·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** :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·사용 및 판매(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단계를 포함한다)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.
- 3.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·보관·운반·처리·배출·저장·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** :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·보관·운반·처리·배출·저장·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기술한다.
- 4. 방사선량률·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** : 측정의 대상 또는 장소 및 주기와 그 결과의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련 양식을 첨부한다.
- 5.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·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** :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과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6.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각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.**
- 6의2.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** :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선량계의 채용방법 및 절차와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판독 또는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7.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** : 교육훈련의 대상, 주기 및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절차 및 결과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8.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** :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.

9.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: 방사선 장해발생자 또는 우려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.
10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: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.
11.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: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급조치,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.
12.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·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: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.
13.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·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: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,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 :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에 대한 내용 및 지정서양식을 포함한다(2019.2.8.~)
14.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: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.

☞ 위 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지침은 『[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](#)』 참조